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 양해각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이하 “랩지노믹스”라 한다)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연구센터 (이하 “정보의학센터”이라 한다) 간에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랩지노믹스와 정보의학센터가 소아 희귀 암의 개인맞춤형 약물치료를 위한 NGS 분석 수행 및 임상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의사를 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의 범위와 역할)

랩지노믹스와 정보의학센터는 상호 협력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분야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 각 항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① 상호 협력 분야

1. 소아 희귀 암 개인맞춤형 약물 치료를 위한 exome 및 targeted sequencing 분석 수행을 위한 협력
2. 개인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평가 기술 개발 및 신기술 지원 연구를 위한 협력

② 랩지노믹스의 역할

1. 정보의학센터에서 개발한 소아 희귀 암의 개인 유전체 데이터 분석 키트를 병원에서 표준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
2.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반 분자진단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LIMS)을 정보의학센터의 연구 실험에 지원하기 위한 협력

③ 정보의학센터의 역할

1. 생산된 소아 희귀 암의 개인 유전체 데이터의 분석 및 키트 개발을 위한 협력
2.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반 분자진단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LIMS)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협력

제 3조 (유효 기간)

- ①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당사자 일방이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는 한 본 양해각서는 1년씩 연장된다.

- ② 본 양해각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양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 4조 (비밀유지)

- ①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이하 “정보제공 당사자”라 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콘텐츠 구성에 대한 정보, 공동 연구개발의 결과물 등을 “정보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 1. 정보제공 당시 “정보수령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경우
 - 2. “정보수령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를 위반하지 않고 “정보제공 당사자” 이외의 적법한 출처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 4. 외부자문 등을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공개당사자는 외부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해제, 해지, 만료 기타 사유로 본 양해각서가 실효된 이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
- ④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양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체결사실 및 그 내용을 언론 등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 상대방과 그 시기 및 방법, 범위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언론 등 제 3자에게 제공, 누설,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사항의 증명으로 각 당사자는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자에 의하여 본 양해각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다.

2016 년 10 월 4 일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시스템 바이오 정보의학 연구센터

대표이사 진 승 현 (인)

원장 김 주 한 (인)